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권력구조

이기동*

- I. 시작하는 말
- II. 당 규약 개정 내용의 특징
- III.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과 잠정적 결론
- IV. 맺는 말

요약

이 글은 신 규약의 특징으로 △수령 유일영도체계의 사후적 제도화: ‘만경대가문’의 사당화 △후계자 유일관리제의 사전적 제도화: 권력상속의 정당화 및 효율화로 대별하였다. 전자의 사례로는 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임을 공식 인정 ②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현저히 강조 ③공산주의 용어 삭제를 통한 사당화의 봉건성 은폐 ④ 당 대회 소집절차 간소화를 통한 총비서의 권능 강화 및 운신의 폭 확대 ⑤ 총비서의 중앙군사위원장직 겸임을 통한 당권과 군권의 통합 제도화 ⑥ 인민군 총정치국의 권능 증대 제도화 등이다. 후자의 사례로는 ① 당 건설에서의 계승성 보장 명시를 통해 권력상속의 제도화 ② 반당 종파분자 제거에 불리한 규제조항 삭제를 통한 당중교환사업 실시 등 당 쇄신 및 정풍운동을 전개 가능성 시사 ③ 총비서직의 당 대회 추대 절차 제도화를 통한 전인민적 추대 모양새 구비 ④ 대표자회의 활용도 제고 및 기동성 강화를 통한 권력세습의 효율화 추구 등이다.

권력구조 관련 쟁점 및 잠정적 결론으로 △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관계는 통일부 등의 주장과 달리, 양대 기구 모두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등 1982년 이후 여전히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분리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관계는 신 규약 상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아 국방위원장의 군사지휘권(군령권)과 상충을 피하였으나,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권”(군정권)을 부여받아 국방위원회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권”과 상충·중복된다. △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국방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다는 근거(국방위원회 당위원회 존재 근거)가 미약하고, 겸직제를 통한 당적 지도 메카니즘은 독립적인 메카니즘이라기 보다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메카니즘으로서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여전히 국방위원회는 당적 지도와 통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방위원장의 직할통치기구로 존재한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핵심어 : 노동당 규약, 사후적 제도화, 사전적 제도화, 권력구조,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I. 시작하는 말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개최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정확히 30년 만에 당 규약을 개정하였다.¹⁾ 북한에는 사회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여러 규범들이 존재하고, 규범들은 일정한 서열을 갖고 있으며, 그 서열을 결정하는 근거는 하위 규범 안에 담겨있다. 북한의 규범서열은 수령의 교시,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 당 규약, 헌법, 그리고 각종 법률의 순으로 정할 수 있다. 우선 헌법은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여 당 규약의 하위 규범임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 규약은 5조 3항(당원의 권리)에서 “당원은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영도체계에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의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은 4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와 5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여 궁극적으로 수령의 교시로부터 구속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은 “내가 늘 말하는 바와 같이 수령님의 교시는 곧 법이며 따라서 그 집행에서는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라는 별도의 교시를 내렸다.²⁾

북한의 당 규약은 의외로 중간정도의 서열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수령의 교시와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이 당 규약보다 상위규범에 위치하는 한, 당 규약의 규범적 실효성과 그 개정에 대해 회의적일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은 당 규약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해 온 사례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1997년과 2010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피선 대상인 당 총비서를 당 대표자회에서 추대하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비서국 비서들을 교체하거나 보충하였다. 그런데 2009년 헌법 개정을 계기로 현실과 규범을 일치시키려는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는 흔적들이 발견된다.³⁾ 북한은

1) 엄밀히 말하여, 북한은 개정이라는 표현대신 수정보충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2) 북한은 교시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과 건설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가르침”으로 정의하면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여 끝까지 관철하여나가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더 없는 영예로 여겨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292.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1998년 이후 현실 속에서 진행되어 온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령도체계’를 헌법상 제도화시켰으며, 공산주의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대체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과 규범의 조응(調應)을 제도적·절차적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회복이나 실현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전체주의체제의 속성상 북한의 법과 규범들은 인민의 기본권(인권) 보장보다 체제의 작동원리이자 반체제에 대한 통제기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과 같은 초법적 규범들이 소멸되고, 당원(전체 인민의 20~30%)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는 당 규약이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의 권능을 초월하지 않는 수준은 되어야 법치주의를 거론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과거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 소련의 헌법처럼 “모든 당기관은 소련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식의 규범질서를 갖춘 국가들이 실존하였다.⁴⁾

이 글은 이번 당 규약 개정이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조응의 일환으로써 사후적 제도화의 측면도 있지만, 현실 정치의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사전적 제도화의 측면도 공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글은 신 규약을 수령 유일영도체계의 사후적 제도화와 후계자 유일관리제의 사전적 제도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권력구조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사후적 제도화와 사전적 제도화는 상호 단절적이지 않으며, 사후적 제도화는 곧 사전적 제도화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글을 관통하는 전반적인 흐름은 신 규약은 3대세습의 부당성을 권력세습의 제도화를 통해 상쇄(countervail)하고 ‘만경대가문’에 의한 사당화와 상속화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당 규약의 공개에 따라 북한 권력구조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잠정적으로나마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10년 9월 28일 북한의 제3차 당 대표자회 개최 이후 향후 권력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제기될 쟁점들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⁵⁾ 당시 필자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과 향후 최고인민회의의 12기 4차회의 또는 5차회의 결과라는 조건을 모두 반영해야 북한 권력구조에 관한 탐구

3) 김갑식, “북한 노동당규약의 개정 배경과 특징,”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2011.1.12).

4) 소련을 비롯하여 불가리아, 헝가리, 중국이 대표적인 예다.

5) 이기동,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4호(2010 겨울).

(search)의 수준을 넘어 보다 객관적인 연구(research)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구 규약과 2009년 개정 헌법을 중심으로 탐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 신 규약이 입수됨에 따라 절반의 조건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최고인민회의의 12기 4차회의 또는 5차회의의 결과라는 절반의 조건은 미비하므로 잠정적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주지하고자 한다.

이 글은 신 규약에 기초한 권력구조를 논의함에 있어서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에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앙군사위원회의 권능이 가장 현저히 변화되었고, 중앙위원회의 권능은 총비서 선거권을 삭제한 것을 빼고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최고인민회의의 12기 4차 회의가 개최되기 전이므로 국방위원회의 변화상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관계는 신 규약과 2009년 개정된 헌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당 규약 개정 내용의 특징

1. 수령 유일영도체계의 사후적 제도화 : 사당화의 제도화

신 규약은 서문 첫머리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라고 하여 노동당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당체제로 운영되어 왔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⁶⁾ 북한 노동당의 사당화 현상은 1967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5 교시가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4년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에 발표되면서 본격화되었고, 1980년대 들어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상이론적 체계화 작업들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러다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 김정일의 논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가 노동신문에 공개되면서 사당화가 공식화되었다.⁷⁾ 공교롭게도 이번 신 규약 서문의 첫머리와 똑같은 문구라는

6) 1차 당대회(1946년) 당시 당 규약과 당 강령은 각각 13개항과 40개조로 별도 작성되었으나, 2차 당대회(1948년)에서 강령이 규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주로 서문을 구성하였다.

7) 『로동신문』, 1995. 10. 2.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활동의 력사이고, 조선로동당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신 규약은 당 규약 상 처음으로 사당화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신 규약은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구 규약이 ‘유일사상체계 강화’만을 언급하고 강조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구 규약이 만들어진 1980년 6차 당 대회까지는 ‘유일적 영도체계’가 이론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수령의 영도체계론은 1982년 ‘혁명적 수령관’이 확립된 이후 1985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의 영도체계 편에서 체계화되었다.⁸⁾ 이후 영도체계론은 1986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른 이론적 보완작업을 거쳐 김일성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신 규약이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강조한 것은 25년 만에 이뤄진 사후적 제도화의 일환이다. 북한이 후계체제 구축기에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산물인 ‘유일적 영도체계’를 사후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후계체제 하에서도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지속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신 규약은 2009년 개정 헌법과 마찬가지로 구 규약으로부터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하였다. 북한의 공간문헌들에서 과거를 묘사하는 방식이 아닌 동 시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써의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1998년 8월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이 등장하면서 사라졌다.⁹⁾ 이후 북한의 여러 공간문헌들은 강성대국의 궁극적 이미지, 즉 목표문화(goal culture)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된 국가’로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강성대국을 택한 데는 이미 실패한 목표문화로서 공산주의의 이념적 구속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었고,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피로감과 구태감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였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3대 세습이 갖는 봉건성이 공산주의 이념과 모순관계이므로 스스로 족쇄를 풀 결과였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구 규약의 서문 둘째 단락에 나오던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과 관련한 언급을 신규약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26년 10월 17일 결성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김일성의 최초 공산주의운동조직이며 김일성 혁명역사의 출발점으로 선전해왔다. 그리고 김정일은 1982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56주년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일은 2010년 8월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하여 김일성의 여러 혁명사

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이며,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날 것이다”

8)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9: 영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9) 『로동신문』, “강성대국,” 1998. 8. 22.

적지를 시찰하면서도 북한 공산주의운동사에서 획기적 사건으로 삼는 『공산주의청년동맹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대회』(일명 카륜회의)가 개최(1930.6.30)되었던 카륜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 카륜은 김정일이 방문했던 지린성 창춘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다.¹⁰⁾

신 규약은 당 대회 개최와 관련, 구 규약이 정한 5년에 1회 소집 및 3개월 전 소집일과 의정 발표 항목을 삭제한 대신, 개최주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소집발표일을 6개월 전으로 연장하고 의정을 발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신 규약은 당 대회 소집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개최 주기를 맞춰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김정일은 1984년에 발표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제하의 논문에서 인민생활이 향상될 때까지 당 대회를 열지 않는 것이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혀, 경제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주기적인 당 대회 개최에 대한 부담을 토론한 바 있다.¹¹⁾ 또한 당 대회 소집절차의 간소화는 궁극적으로 당 운영에서 총비서의 권능과 더불어 권능행사시 운신의 폭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구 규약과 더불어 신 규약 역시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 사이의 모든 당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이의 모든 당 사업을 조직지도”하게 되어 있어, 결국 귀납적으로 추론하면 비상설기구의 하향식 위임조항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모든 당 사업을 조직지도하게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신 규약에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의 수반이다”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총비서는 당연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장악하게 되어 당 대회 개최의 부담 없이도 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당 대회의 권능을 대신할 수 있게 제도화 되었다.

신 규약은 △당의 수반 △당의 대표이자 전당의 영도자 △중앙군사위원장직 겸직을 총비서직의 권능으로 규정하였다. 신 규약이 총비서직의 권능을 자세히 규정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총비서 중심의 사당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중앙군사위원장직 겸임은 총비서에게 당권과 군권의 동시 일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체제의 안정적 유지와 권력이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구 규약은 중앙위원회의 산하기

10) 북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30년에 있던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 로선을 제히 하면서 혁명적당창건의 독창적 길을 밝히시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11)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구로 군사위원회를 두었다.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1982년 중앙군사위원회로 호칭되면서 분리·격상되었음이 밝혀졌다.¹²⁾ 당시 분리·격상의 이유로는 중앙위원회 내 군부의 비대화 현상 억제 및 권력이양기 수령과 후계자의 역할분담 등을 들 수 있다.¹³⁾ 중앙군사위원장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1998년 폐지된 주석직을 제외하고 최고사령관직(1991), 국방위원장직(1993), 총비서직(1997)의 공식 승계와 달리, 중앙군사위원장직 만큼은 공식 승계 여부와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1982년 이후 특정 시점에 비공개적으로 중앙군사위원장직을 물려받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1997년 당 총비서직에 추대되면서 당연직으로 중앙군사위원장직을 맡았을 가능성이다. 전자는 1982년 중앙군사위원회로 분리되면서 중앙군사위원장직을 맡았을 가능성과 1991년 최고사령관직을 맡으면서 물려받았을 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2년 추정의 근거로는 2009년 3월 출판된 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선군혁명사>는 김정일의 선군혁명사를 5단계로 구분하는 가운데, 3단계를 1982년 6월부터 1994년 12월까지로 잡았다.¹⁴⁾ 북한 자료들과 문헌들을 검토해 본 결과, 1982년 6월을 전후로 김정일의 선군업적으로 특기할만한 사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 해에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로 분리·승격된 사실이 존재하는 데, 이 과정에서 김정일이 중앙군사위원장직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다. 그러나 상기 추정은 1990년 한 해 동안 북한체제 전반의 현황을 정리해 놓은 1991년판 『조선중앙년감』에서 김일성을 당중앙군사위원회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다. 그리고 1991년 추정의 근거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최고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므로 최고사령관직의 승계는 중앙군사위원장직의 자동 승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다. 그리고 후자는 1997년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아니라 당 총비서직에 추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군사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겸임했을 가능성에 기초한 추론이다.¹⁵⁾ 앞으로 더 심층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

12) 1982년 11월 개최된 포병대회에서 김정일과 오진우의 직책이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호칭되면서 변동사실이 최초로 인지되었다.

13) 중앙군사위원회의 분리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기동(2010a), pp. 222, 233-234.

14) 『로동신문』, 2009. 3. 22. 동 도서는 1단계: 1942.2~1960.8, 2단계: 1960.8~1982.6, 3단계: 1982.6~1994.12, 4단계: 1995.1~1998.12, 5단계: 1999.1~현재로 구분

15) 당 총비서는 당 규약과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세칙에 의거, 중앙군사위원장직 외에도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원, 중앙위원직을 당연직으로 맡음. “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 규약과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세칙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겠지만, 이번 신 규약이 사후적 제도화의 흔적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신 규약은 구 규약과 마찬가지로 총정치국을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지만, 구 규약에 없던 새로운 권능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새로운 권능은 “당 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다른 당 기관이나 기구들처럼 구체적으로 권능을 명시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총정치국의 권능이 당중앙위원회만큼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 보다는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처럼 인민군 당위원회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군대내 당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상설 기구로서의 권능만이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처럼 집행부서로서의 권능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정치국이 수행하는 업무영역도 본래의 영역인 군대내 정치사업만이 아니라, 군사사업을 비롯한 전반적 사업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인민군 당위원회 산하에는 도·시·군 당위원회처럼 집행위원회, 비서처 등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총정치국이 대신하게 되어 있다. 한편,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에서 권능의 개념을 지위의 개념과 동일시하여 총정치국이 정치국이나 비서국처럼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구 중의 하나로 격상되었다거나 사실상 중앙당 기구화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¹⁶⁾ 그러나 북한에서 말하는 ‘권능’의 정의는 권리와 직능의 준말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¹⁷⁾하므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다른 여러 사물이나 현상들 가운데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하는 지위의 개념¹⁸⁾과는 다르다. 따라서 총정치국 지위의 격상보다는 능력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선군시대 총정치국의 권능 확장은 선군노선 추진 과정에서 ‘당에 의한 선군정치’와 ‘군에 대한 당적 지도’ 원칙을 유지·고수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총정치국은 신 규약이 새로 정한 권능을 이미 오래전부터 행사해 왔으므로 사후적 제도화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진행,” 2010. 9. 28.

16) 김갑식(2011).

17)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526.

18)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375.

2. 후계자 유일관리제의 사전적 제도화 : 권력상속의 정당화 및 효율화

신 규약은 당 건설의 기본원칙으로 유일사상체계 확립,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그리고 당 건설에서의 계승성 보장을 제시하였다. 이는 구 규약에서 유일사상체계 확립만을 당 건설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다양해졌다. 특히, 당 건설에서의 계승성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신 규약에 ‘당 건설에서의 계승성 보장’이라고 못 박은 것은 사당화에 이어 당의 상속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셈이다.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권에 이어 상속권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사유재산권이 완결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신 규약은 구 규약이 정한 종파주의 등 반당세력 제거에 불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당증교환사업 실시 등 당 쇄신 및 정풍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신 규약에서는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이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의 당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당생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당세포의 출당비준절차와 관계없이 당증회수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은 1953년 6.25전쟁 이후 당시 소련과 지도자인 허가이의 주도로 당증교환사업을 벌여 당원의 75%를 제명하는 조치를 단행하였고,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거친 이후 반당 종파 분자 여독청산 차원에서 당증교환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앞서 두 차례의 당증교환사업의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당원의 감소로 인한 혁명역량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 규약에 명예당원제(10조)를 신설한 점이 주목된다. 물론 명예당원제의 신설은 세대교체로 물러나는 원로당원들에 대한 시혜적 측면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신 규약은 당원의 책별시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책별제도의 일산분란화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원의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원칙적 표현을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당위적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신 규약은 중앙당이 당원들에 대한 강제를 보다 용이하도록 만들어 화폐개혁 실패의 후유증과 3대세습에 대한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당증교환사업을 실시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 규약은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도입된 당중앙위원회 준후보위원제를 폐지하였다. 당시 준후보위원제 도입은 후계자로 부상하던 김정일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신진세력을 중앙당에 영입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산권에서는 유례없는 제도라고 해석하는 주장이 있다.¹⁹⁾ 이런 해석대로하면 현재도 당시처럼 김정은을 보좌할 신진세력들의 중

양당 진출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굳이 준후보위원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1970년 당시는 당중앙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던 시기였으므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곧바로 준후보위원 중에서 보선을 해야 하므로, 후보위원을 위한 인재풀로서의 준후보위원제가 필요했다는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구 규약은 총비서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했던 반면, 신 규약은 당 대회에서 추대하도록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총비서 추대는 당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당 대표자회, 선거가 아니라 추대의 형식이었으므로, 엄밀히 말해 당 규약 위반이자 파격에 해당한다.²⁰⁾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총비서를 대표자회에서 추대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총비서직의 격상과 관련이 있다. 1997년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과 달리, 당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아니라 당 총비서직에 올랐다.²¹⁾ 따라서 지위격상에 따른 예우와 의전 차원에서 최소한 전당적 지지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당 대표자회와 추대의 형식을 갖춘 것이다. 그런데 신 규약은 총비서 추대의 권한을 당 대표자회가 아닌 당 대회에 부여함으로써 총비서 추대의 형식을 재차 격상시켰다. 당 총비서직은 중앙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책임을 초월하여 ‘당의 수반으로서 전당을 영도’하는 지위이며, 수령의 영도체계 중 하나이므로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에서 세속적 선거가 아닌 상징적 추대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²²⁾ 이처럼 북한이 당 대회에서의 총비서 추대를 절차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후계자 김정일의 취약한 인격적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金正은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아닌 당 대회라는 전 인민적 추대 절차를 통해 총비서직에 등극함으로써 수령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한편, 이를 인격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조심스럽게 엿보인다.

신 규약은 당의 조직 및 인사사업에서 당 대표자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동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임시 당대회에 버금가는 기구로 만들었다. 우선 신 규약은 당대표자회에 기존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에 대한 소환과 보선권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최고지도기관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여기서 당중앙지도기관은 당 중앙위원, 후보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를 가리키고, 최고지도기관은 당중앙위원회와 중

19)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319.

20) 김정일은 1997년 7월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등 각급 당 대표자회의 공동 형식으로,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총비서직에 추대되었다.

21)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선거되었다.

22) 이와 관련해서는 김갑식(2011); 이기동, “인민생활 향상, 후계자를 위한 절규,” 『통일한국』, 2월호(2010), pp. 18-19를 참조할 것.

양검사위원회를 비롯하여 중앙군사위원회와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그리고 비서국 비서를 포함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최고지도기관은 중앙지도기관의 구성원인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중에서 선출된 인물들로 구성된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신 규약 상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핵심 권한인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원, 비서국 비서 등의 선거권을 최고지도기관 선거라는 이름하에 당 대표자회에도 중복 부여한 것이 된다. 이는 전당적·전인민적 모양새가 필요할 경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보다는 당 대표자회를 개최하여 최고지도기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당 대회의 권한인 당 규약 수정·보충 권한을 당 대표자회에 중복 부여한 것 역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 대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당 대표자회에 규약 수정·보충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신 규약은 여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 대표자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안전판을 마련하였다.

III.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과 잠정적 결론

1.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당 중앙위원회의 관계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관계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산하기구로 재편입되었는지 아니면 1982년 중앙위원회로부터 분리·승격된 이후 여전히 분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필자는 재편입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하였다.²³⁾ 첫째는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아닌 여전히 중앙군사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분리·승격 의도 중의 하나인 수령과 후계자의 역할분담 필요성이 현 상황에서도 유효하다는 점, 셋째는 중앙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를 선거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²⁴⁾ 따라서 필자는 재편입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기 세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답을

23) 통일부 홈페이지 등 재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신 규약 11조 1항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 조직 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한다”에 의거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가 상위기관이라는 논리다.

24) 정확히 말하자면, 2010년 9월 28일 중앙위원회가 아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회를 선거가 아닌 ‘조직’ 하였다.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신 규약을 분석한 결과, 상기 의문점들을 풀만한 근거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분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중앙 군사위원회가 중앙위원회로 재편입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굳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라는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총비서가 당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중앙위원회를 영도한다면, 중앙위원회 산하기구인 중앙 군사위원회도 자동적으로 조직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대 기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총비서의 중앙군사위원장 겸직을 명문화 한 것이다. 총비서의 중앙 군사위원장 당연직은 유사시 신속한 당권과 군권장악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은 항상 총비서와 별개의 인물이 맡기 때문에 당 규약에서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직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둘째, 신 규약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 규약은 공히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라고 하여 똑같이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당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두 당 대회 차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유사반열 기구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분리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당내에 군부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양대 기구를 통합할 경우 군부가 중앙위원회를 장악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앙군사위원회 중심의 후계자 유일관리제와 중앙위원회 중심의 수령 유일영도체계가 상충하고 서로 파급(spill-over)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다. 특히,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분리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분리구조는 후계자가 중앙위원회(정치국과 비서국)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영호 정치국 상무위원, 장성택 행정부장, 최용해 비서를 비롯한 중앙군사위원들의 중앙위원회 부서 겸직을 통해 중앙위원회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고, 만일 조직비서나 조직지도부장직이 후계자의 당연직이라면 중앙위원회 장악이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여러 거래비용을 감수하면서 굳이 양대 기구의 통합을 추진할 현실적 필요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관계

구 규약을 기준으로 보면, 당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대칭적 비교 대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방위원회는 1998년 헌법개정 이후부터 2009년 헌법개정까지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영도체계’가 확립되어 단순히 국방·군사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아니라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세우는’ 기관(헌법 109조 1항)으로 승격된 반면, 중앙군사위원회는 주로 “당군사정책 토의·결정,” “무장력 강화 및 군수산업 발전 사업 조직지도,” 그리고 “군대 지휘”와 같은 주로 군사부문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규약에서는 “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 및 “혁명무력 강화 및 군수공업 발전,”에 더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와 같은 중요한 권능이 포함되어 거의 대칭적 비교수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군노선 하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사업은 국방에 복종해야 하므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는 것은 국정 전반을 지도한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의 관계에서 권능의 중복 및 상충에 관심을 두었다.²⁵⁾ 구 규약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지휘권과 군사지도권을 갖고,²⁶⁾ 2009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국방위원장은 군사지휘권을, 국방위원회는 군사지도권을 각각 보유²⁷⁾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 규약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군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국방위원장의 군사지휘권(군령권)을 인정하고 중복과 상충을 피하였다. 그러나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권”을 포괄하는 “국방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권”(군정권)을 부여받아 상충과 중복이 된다. 다시 말해서 중앙군사위원회가 당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라면 국방위원회는 헌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인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첫째, 향후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의 권

25) 이기동(2010a).

26)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임무를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2009년 개정 헌법은 제102조에서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군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헌법 제109조 2항 “국방위원회는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군사지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을 조정하여 국방지도권과 관련이 있는 권능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위원장은 군령권,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정권이라는 어색한 구도가 형성되는 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위원회 개편을 통해 중국식으로 국방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 일체화를 도모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어진 권능에 손대지 않고, 현재의 국방위원회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위원회 당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의 국방사업에 한하여 ‘당적으로’ 지도하는 가정이다.²⁸⁾ 물론 국방위원회 당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직·인사 및 당생활지도 업무는 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이뤄진다.

필자는 두 가지 가정 중 어느 쪽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보면, 국방위원회가 존속되는 한, 국방위원회 만큼은 당적 지도와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국방위원장의 직할통치기구로 계속 운용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념적·제도적으로 보면, 당 규약이나 헌법상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인민정권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²⁹⁾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국방위원회가 인민정권기관에 속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서 주권기관이며,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성원들이 선거된다는 점만으로도 인민정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당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관계

당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관계는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와 통제 여부가 일차적 관심사다. 그리고 논의의 핵심은 제도적 통제기제로서의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가 행사되고 있는지와 인격적 통제기제로서의 점직제가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다. 우선 필자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가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방위원회 당위원회의 존재 여부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³⁰⁾ 그

28) 신 규약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권능과 관련한 내용에서 유독 “당적으로 지도한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9) 헌법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당 규약 52조 “인민정권기관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신 규약은 처음으로 당과 인민정권의 관계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였다.

30) 이기동, “전략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2호(2009), pp. 136-137.

리고 당 대표자회 조사 결과, 내각대표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대표의 존재는 확인되는 데 국방위원회 대표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국방위원회 당위원회와 정치국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방위원회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가 행사되지 않고 있으며, 국방위원회는 국방위원장의 직할통치기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헌법 제103조 2항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라고 명시, 이례적으로 “직접 지도”를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직할통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신 규약에서 인민정권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권능 중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방위원회 당위원회를 조직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인격적 통제기제로서의 검직제의 작동 여부는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회의 또는 5차회의가 열리고 국방위원회 개편 결과에 따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필자는 만약 100%의 검직률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당위원회가 없는 검직제는 당적 지도와 통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서, 검직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따른 당적 통제와 지도를 보완하거나 발전시키는 기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방위원회 당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위원들이 소집될 경우 정체성의 혼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당의 결정인지 국방위원회의 결정인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빈발할 것이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에 따르면, 신 규약은 과거 지향적이고 복고적(復古的) 성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체제의 연성화를 시사하는 대목도 발견되지 않는다. 신 규약은 주로 수령 유일영도체제와 후계자의 유일관리제를 정당화하고 제도화시켜 후계체제의 안착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였다. 3대 세습의 봉건성을 은폐하기 위해 공산주의와 같은 이와 모순되는 내용들을 전부 삭제하였고, 3대 세습의 부당성을 상쇄하기 위해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게다가 권력구조는 후계체제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신 규약은 2012년까지의 과도적 규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에 가면 북한은 강성대국 대문 진입에 대한 총결산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7차 당 대회를 개최해야 하고, 당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으로서의 ‘세계강국 달성,’이나 ‘강성대국 영마루’ 점령을 제시해야 하며, 그것을 당 규약에 담을 필요가 있다. 차제에 김정은 시대에 맞는 권력구조와 관련있는 당 규약의 개정도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1984년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당 대회를 개최하려면 경제문제가 가시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이 2010년부터 북한이 인민경제 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웠고, 최근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2010년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2012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당 대회 개최와 경제문제 해결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할 김정은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그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시험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논문투고일: 2011. 02. 25]

[심사의뢰일: 2011. 03. 10]

[게재확정일: 2011. 04. 12]

참 고 문 헌

- 김갑식. “북한 노동당규약의 개정 배경과 특징.”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1.1.12).
- 김근식. “김정은 후계체제와 한반도: 안정성과 불안정성.” 『한반도 포커스』, 2010년 11·12월호.
-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4.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9 :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이관세. “김정은 후계체제와 당-정관계.” 『한반도 포커스』. 2010년 11·12월호.
- 이기동. “전략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2호(2009).
- _____. “인민생활 향상, 후계자를 위한 절규.” 『통일한국』, 2월호(2010).
- _____.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4호(2010년 겨울).
- 이대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소련,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 『국방연구』, 47권 2호(2004).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_____. “김정일시대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엘리트.” 『세종정책연구』, 제6권 1호(2010).
- 정성장.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체계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2010).
- 통일부. 『2010 북한 권력기구도』. 2010.
- 『로동신문』
-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 『열린북한통신』

The Revision of Rules and Power Structures of the WPK

Lee, Gee Dong

Keywords

WPK Rules, Post-institutionalization, Pre-institutionalization, Power Structure

The revised Rules of the WPK have largely two features as followings. 1) post-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ryong monolithic leadership, 2) pre-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ccessor monolithic management. The cases of the former are ① official recognition on the private party of Kim Il Sung, ② emphasizing the reinforcement of a monolithic leadership, ③ covering up the feudalistic contents in privatization of the WPK through the elimination of the terms 'communism,' etc. The cases of the latter are ①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inheritance by marking the 'succession' on the Rules, ② implication on the possibility of mass purge by the exchange of party-liscence, ③ appearance preparation that have a Successor as a General Secretary by whole peoples, etc. I tentatively concluded that the power structure was partly changed in levels of three relationship.

이기동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남북관계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고,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삼임정책위원직을 맡고 있으며,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1992~1998)과 북한연구학회 총무위원장(2006), 편집위원장(2007), 연구이사(2010)로 활동하였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에서 정치학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분야는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로 주로 북한의 후계체제와 권력구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주요 저서로는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10);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8) 등이 있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구조의 쟁점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2010년 12월); “북한 후계체제 구축과 변수,” 『KDI 북한경제 리뷰』(2010년 9월호); “북한 경제개혁의 정치적 조건과 영향,” 『통일정책연구』(2010년 상반기호); “민족주의와 민족통합,” 『현대북한연구』(2010년 상반기호); “전략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북한연구학회보』(2009년 하반기호);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력사업 추진방향,” 『정책연구』(2009년 하반기호) 등이 있다.

이규창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부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북한법, 남북관계법, 한반도 및 통일관련 국제법 문제, 북한인권 등이다. 저서로는 『북한국제법연구』(2009, 공저), 『한반도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2010),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2010, 공저) 등이 있다. 최근 연구논문으로는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2010), “남한주민의 북한지역 출입·체류와 신변안전보장”(2010),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2011) 등이 있다.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